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722 발의연월일: 2023. 8. 8.

발 의 자: 강민정·서동용·민형배

양이원영 · 김용민 · 김승원

진성준 · 최강욱 · 문정복

김경만 · 김영호 · 이용우

윤미향 • 양정숙 • 권인숙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또한, 「교육기본법」 제14조는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이 존중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획일적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목적에 도달하게 함을 의미함.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학생들이 그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 교육 환경과 여건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이를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함.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존중은 날로 약화되고, 모든 아이가 누려야 할 교육받을 권리 또한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기도한.

현행법은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조치나 대처에 활용하기에 미흡함. 특히, 일부 학생의 경우 교과 수업 외에 별도의 상담, 치료, 학습지원 등이 필요함에도 학교가 해당 학생에게 이러한 지원하거나 권고할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치료 권고, 상담 및 학습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에게 학교가 해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안 제18조의4),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 중이라도 즉시 분리하여 특별교육을 할 수 있게 함(안 제18조의4, 제18조의5).

학생에 대한 교육과 훈육은 학교와 가정이 함께 협력하고 책임져야 하므로 학생이 지속적으로 흥분하거나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 응하 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의 장이 보호자 등에게 학 교로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18조의5).

또한, 교육활동과 관련한 민원은 학교의 장이 처리하도록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안 제20조),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 등에게 교육활동 보호 관계 법령 및 민원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며(안 제20조의3), 학교의 장은 보호자 등이 교원에게 사적으로 연락할 수 없도록 학교에 제기하는 민원을 처

리하기 위한 공적인 소통창구를 설치·운영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민원이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 30조의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급 담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의 의견을 들어 해당학생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행동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하고,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학생"이라 한다)에게 치료 권고, 상담 및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는 치료, 상담 및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지원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제1절에 제1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5(학생의 즉시 분리) ① 교원은 학생이 수업 중 「교원의 지위 항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거나 수업진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리된 학생을 위해 별도의 공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전담 인력을 두고,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리된 학생이 지속해서 흥분상태에 있거나 제2항에 따른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 응하지 않을 경우보호자에게 학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따라야 한다.
- 제19조의2에 제1항 중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를 "전문상담교사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상주하는 전문상담교사를 두기 어려운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벽지의 학교는 제3항에 따른 전문상담순회교사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전문상담교사를 두어야 한다.
 - ③ 시·도 교육행정기관은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 ④ 시·도 교육행정기관은 학교의 상담업무가 과중하거나 급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학교에 추가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중 "교육한다"를 "교육하고,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 민 원을 처리한다"로 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의3(교육활동 등의 보호 관련 안내) 학교의 장은 교직원의 교육활동 및 그 지원 업무 수행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학생 및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1. 이 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률에 따 른 교육활동과 학습권 보호에 관한 사항 및 위반 시 조치 사항
- 2. 학교에 제기하는 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4장제1절에 제30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0조의10(학교 민원의 처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보호자 등 민원인 이 학교에 제기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자 의견 등을 수렴할 공적인 소통창구를 설치·운영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민원이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 영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급 담임 교사 및 전문상담교사의 의견을 들어 해당 학생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행동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하고,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학생"이라 한다)에게 치료권고, 상담 및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는 치료, 상담및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
<u><신 설></u>	다. ④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
<신 설>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학생의 즉시 분리) ① 교원은 학생이 수업 중 「교원

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각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거나 수업진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및 다른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리된 학생을 위해 별도의 공 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을 충족한 전담 인력을 두고,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교 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 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리된 학생이 지속해서 흥분 상태에 있거나 제2항에 따른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 응하 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학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두거나 <u>시·도 교육행정기관에</u>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상주하는 전문상담교사를 두기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u><</u>신 설>

② (생략)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 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 육한다.

② ~ ⑤ (생 략)

- 등)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등) ①-----전문상담교사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어려운 「도서・벽지 교육진흥 법」에 따른 도서 · 벽지의 학 교는 제3항에 따른 전문상담순 회교사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 상의 전문상담교사를 두어야 한다.
 - ③ 시・도 교육행정기관은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④ 시·도 교육행정기관은 학 교의 상담업무가 과중하거나 급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학교에 추가 배치할 수 있다. ⑤ (현행 제2항과 같음)

육하고,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 교 민원을 처리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 제20조의3(교육활동 등의 보호 관련 안내) 학교의 장은 교직 원의 교육활동 및 그 지원 업 무 수행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학생 및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안내하여야 한다.
 - 1. 이 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률에 따른 교육활동과 학습권 보호에 관한 사항 및 위반 시 조치사항
 - 2. 학교에 제기하는 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30조의10(학교 민원의 처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보호자 등 민원인이 학교에 제기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연구를 살지 수렴할 공적인 소통 장구를 설치・운영하고, 교육부 명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민원이 처리되도록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